

의안 번호	제3622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2조 제2항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0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.
-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재생기반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정비·구체화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기반시설인 공동시설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추가 조항을 신설(안 제3조제3호)
- 나.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례 명칭 정비(안 제7조, 제25조, 제27조)
- 다.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22조제2항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